금강산관광지구 보험규정

제정 2007-03-20 주체9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90호로 채택)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 활동과 거주자, 체류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관광지구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법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관광지구에 거주, 체류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험사업원칙)

관광지구에서 보험사업은 자원성과 의무성, 신용의 원칙에서 한다.

제4조(관광지구 보험회사)

관광지구에서 보험사업은 정해진 보험회사가 한다. 관광지구 보험회사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5조(보험회사의 지사, 사무소설치)

관광지구 보험회사는 관광지구안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원칙)

관광지구에서 법인 또는 개인은 관광지구보험회사(이 아래부터는 보험자라 한다)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7조(의무보험대상)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1. 화재, 폭발, 자연재해로 건물, 기계설비, 원료, 자재, 비품 같은 재산에 생긴 손해

2. 가스사고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 자동차사고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4.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재해로 입은 손해

5. 건설공사과정에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6. 관광객이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

제8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이 아래부터는 피보험자라 한다)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도 있다.

제9조(보험계약의 신청)

보험에 들려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계약신청서에는 보험대상,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된다.

제11조(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12조(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보험료의 미납과 계약의 효력관계)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의 납부를 정한 기간에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납부기간을 다시 정하여 주며 그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증권을 양도하려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피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제15조(위험변경의 통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였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더 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되면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6조(보험대상관리상태의 조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대상관리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견한 결함의 퇴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보험사고통지와 사고현장보존)

피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48시간안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피보험자의 손해경감의무)

피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가 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늘어나는 손해를 막는데 들인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사고의 감정)

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감정을 조직할수 있다.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한다.

제20조(보험보상청구문건의 제출기일)

피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30일안으로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정한 기간까지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낼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보험보상금의 지불)

보험자는 보험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는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제22조(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보상금지불)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수있다.

제23조(피보험자의 보상청구권확보)

피보험자는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자의 보험계약취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기간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안에 보험위험의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 보험자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보험자의 권고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4.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켰거나 허위신고로 보험보상을 요구하였을 경우

5. 이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5조(보험계약의 취소조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수 없거나 보험계약 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된다.

제26조(보험보상청구시효기간)

보험보상청구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7조(벌금부과)

이 규정 제6조의 사항을 어겼거나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정보험료의 3배까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관광지구에서 보험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얻은 소득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28조(분쟁해결)

보험당사자들사이에 제기되는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수도 있다.

제29조(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한다.